

광명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제정 1985. 4. 4 규칙 제 150호
 개정 1988. 10. 25 규칙 제 266호
 1999. 9. 20 규칙 제 749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5. 12. 11 규칙 제1120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
 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184호(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6. 16>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9. 20>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장 학생 지원 자격 학업 성적 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학교별	재 학 생	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	성적우수자	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고등학교	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	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12. 1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지원서

① 성 명	(한자)	② 생년월일		사 진
③ 현주소				
④ 재 적 학 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⑦ 직 업	⑧ 주 소	⑨ 지원자와의 관 계
<p>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p> <p>첨부 : 학교장 추천서 1부</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p>년 월 일</p> <p>지원자 성명 (인)</p> <p>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인)</p> </div> <p style="margin-top: 20px;">광 명 시 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 12. 1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추천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재 적 학 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p>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p>첨부: 성적증명서 1통</p>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광 명 시 장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12. 11>

재 정 보 증 서

장 학 생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재 적 학 교	학 교	학 과	학 년
		(전공과목 :)		
친대 권리 자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p>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p> <p>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p> <p>광 명 시 장 귀하</p>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 12. 11>

기 관 명

분류번호: (전화:) . . .

수 신: ○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도, 군)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재 적 학 교	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증 서 번 호:	기타사항	
선 발 기 록	증서수여일자:		

첨부: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광 명 시 장 직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8. 6. 16>

증서번호 제 호

장 학 증 서

○ ○ 학(교) ○ ○ 학과 제 ○ 학년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이므로 이
장학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직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8. 6. 16>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금지금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장 학 생		신 청 액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기 타	

년 월 일

○ ○ 학교장

직 인

광 명 시 장 직 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 12. 1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성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갑1)

성명	한자()	생년월일	호주()	와의 관계()	
주소	통/반	세대주	주소	통/반	세대주
	/			/	
	/			/	
	/			/	
	/			/	
	/			/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 기타 특기사항

3. 재정보증인

(갑2)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①			
②			

4. 관리기록

지원~ 선발	학 교 명		학 년		전공학과	
	지원일자		선발일자		선발당시 학교성적	평균 점(석차/)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지 급 일	지 급 액	누 계
장 학 금 지 급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연 월 일	적 요	연 월 일	적 요

6. 임용상황

임			용		임용대기	임용대기		
일	자	계	급	직	렬	기관(계단위까지)	(사유)	(사유)

7. 장학금 반납 ※ 장학금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지급총액	
연월일	반	납	액	잔	액

8. 기타 특기사항 ※ 연락 전화번호 자택() 학교()

[별지 제8호 서식]

○ ○ 학 교
(전화)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광명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재학생 본인		지 급 시 일	지 급 액				수령인	비 고
학 교	성 명		계	입학금	등록금	본인지급		

○ ○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9호 서식]

○ ○ 학 교
(전화)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광명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성 명	학 과	학 년	비 고

2. ()년도 ()학기 (분기)말 성적

성 적 사 항				출 석 사 항	
과 목	성 적	과 목	성 적	구 분	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 석 륜 (%)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평 균		석 차	/		

○ ○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10호 서식]

○ ○ 학 교
(전화)

분류번호: 년 월 일

수 신: 광명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학 과	학 년	비 고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0호 각 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학 교 장 직 인